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 (안 부칙 제2조)

-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 본 조례안은

-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 교육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에서 한시기구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바, 2021.10.12. 서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음.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 계획하였던 사업들의 기반이 조성되어 구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09 호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영등포구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미래도시 영등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개정(안 부칙 제2조)

-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한시기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p>	<p>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한시기구) ----- ----- ---- <u>2022년 12월 31일</u>-----.</p>